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정환 의원 외 17명
- 나. 의안번호: 제1955호
- 다. 발의일자: 2020. 10. 16.
- 라. 회부일자: 2020. 10. 26.

2. 제 안 사 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및 의무사용량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하고 있음.

순환골재는 크기별로 100mm, 40mm, 25mm, 13mm 및 모래로 구분되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및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되고 있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요>

구분	대상			의무사용제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제품	아스팔트콘크리트제조용 순환골재를 25%(중량기준) 이상 사용한 제품			· GR 인증제품 · 환경표지 인증제품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중량기준) 이상 사용한 제품(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			· 중기형 성능인증제품 · 단체표준인증
순환골재	40mm 골재	25mm 골재	13mm 골재	모래
				

-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와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 접수 일체와 순환골재 등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08년,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¹⁾한 이후 2010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훈령에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 사용용도 및 사용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음.

다만, 현행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 총 8개 지방자치단체²⁾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을 규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세부 조항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짐.

다만, 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서울시 훈령 제949호, 2008년 2월 14일 제정

2)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